

제안요청서

사업명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2024. 4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유다은
연락처	044-201-4843 deyoo93@korea.kr

- 목 차 -

I. 연구용역 개요	1
II. 제안 요청사항	2
III. 과업수행지침	5
IV. 보안 대책	10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1
VI. 제안서 평가	13
VII. 계약상대자 선정	15
※ 제안서 관련 양식	16

연구용역 개요

1. 과업명 :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 현행 도시계획 변경 이익 환수제(공공기여)는 특혜시비 방지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임에도,
 -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전협상·이행담보 절차 등 절차적 규정 미비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혼선 등으로 활용성 제약
- * 도시지역 내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에만 적용
- 공공기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확대방안 마련, 절차적 규정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필요

3. 과업의 목적

- 공공기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공간혁신구역(3종) 도입에 따른 공공기여 적용 기준 정비
- 공공기여 제도 확대방안(공공기여 대상, 설치·납부범위 등)을 마련하고,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공공기여 연계) 등 제도개선안 마련

4. 용역비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6. 계약방법 : 공개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이행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용역 수행자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격평가 실시

1. 주요 과업내용

- 공공기여 제도의 정립
- 공간혁신구역(3종) 도입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비
- 공공기여 제도 확대방안 마련
-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의 정립
- 공공기여금 자원관리 및 공공기여 이행 담보방안 마련
-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마련

 공공기여 제도의 정립

○ 공공기여 개념 확립 및 법적근거 검토

- 공공기여 제도와 기부채납 운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예시) 계획이득에 대한 검토, 공공기여, 무상귀속, 기부채납, 개발행위 조건 등 국토 계획법령 및 타 법령(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에 있는 유사제도 등을 비교·검토 등

○ 공공기여 제도의 주요 내용 구체화

 공간혁신구역(3종) 도입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비

-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건축제한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도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공기여 적용 방안(가이드라인 등)

 공공기여 제도 확대방안 마련

○ 공공기여 제도 확대방안 마련

- 공공기여 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납부 범위 확대*

* (예시) 사업구역 밖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사업구역 내 비용 납부

- 공공시설등 종류* 다양화

* (예시)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도시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시설(생활인프라 등)

- 공공기여 제도 적용대상 확대* 검토

* (예시) 공공기여를 도시재생사업, 제1종일반주거→준주거 등 종내 변경, 비도시지역 (생산관리 → 계획관리 변경 등), 기존시설 고도화에도 적용하는 방안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한 사례 등 조사 필요

□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의 정립

-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개념 확립
-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의 원칙, 대상, 범위, 요건, 절차 등 기준 검토
- 사전협상형 도시계획과 공공기여 제도 간 연계방안 제시

□ 공공기여금 재원관리 및 공공기여 이행 담보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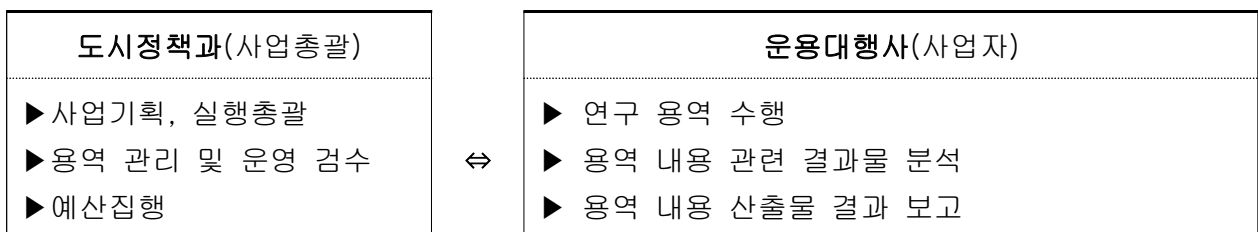
- 공공기여 설치·적용지역, 공공기여 이행 시점, 이행담보 방안*
 - * 불이행 방지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체납처분절차 등 도입방안 등
- 협의, 설치, 귀속, 운영·관리 등 단계별 공공기여 주체 검토
- 공공기여금 운용 방안*, 각종 기금 용도 확대방안
 - * 공공시설 투자에만 쓰이도록 기금설치 의무화 방안(현재는 지자체 재량) 검토 등

□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마련

- 국토계획법(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개정안 등 제도개선(안) 마련
 - * 필요시 외부 법률자문 실시

2. 과업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구성 및 역할



* 도시정책과(사업총괄)와 운영대행사(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유지 필수

□ 추진 일정

세부내용	기간(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 공공기여 제도의 정립	■							
○ 공간혁신구역(3종) 도입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비	■	■	■					
○ 공공기여 제도 확대방안 마련			■	■				
○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 정립				■	■	■		
○ 공공기여금 자원관리 및 공공기여 이행 담보방안 마련						■	■	
○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마련	■	■	■	■	■	■	■	
○ 최종보고서 작성							■	■
주요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상기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정부 등에서 시행중 이거나 수립중인 각종 계획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 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5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 준공 10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수지침

가.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비용의 사용

-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인쇄비, 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시해야 한다.
-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사업(연구)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경리하고, 사업비를 인출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소요된 비용만 인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마.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 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저장장치 등에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구 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4일 이내	10부	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착수 후 5개월 이내	10부	과업의 중간연구 결과
최종보고서	준공 시	30부	10절(A4), USB 1부

※ 필요시 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1) 과업수행 대표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훈령 제906호, ‘17.7.13)” 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5)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6)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8)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 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PDF 파일 1부(나라장터 전자 제출)

* 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I. 제안개요	○ 제안요청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력,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개인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이력 사항)	
III. 제안 내용		
1. 연구 개요	○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연구방향 및 내용	○ 연구의 방향과 연구 내용을 기술	
3. 과제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 참여연구원 규모 및 각 연구원별 업무분장 내용을 기술	
4. 용역기간(추진일정)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착수보고, 수시보고, 검토회의 등)	
5. 기타 관리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IV. 기타		
1.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 제시 - 연구수행 범위 설정 - 연구수행 방법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	
2. 추가제안 부분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1.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요소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가방법
제안기관 일반현황 (20)	기관 평가	○ 기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계량
		○ 관련 연구 인력(석, 박사 등) 보유수	5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여부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10	“
과업수행 부분(80)	제안 개요	○ 연구용역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한 이해 정도	5	비계량
	연구의 방향 및 내용	○ 연구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연구 내용의 적합성 ○ 적용 논리의 적정성	20	“
	연구인력 및 업무분장	○ 연구조직 인력구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원 업무분장의 적정성	5	“
	연구 기간	○ 연구용역 추진일정 · 방법의 적절성 ○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0	“
	기타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10	“
	기술 · 지식 능력	○ 연구용역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성	30	“
계		100		

※ 기술능력(90%) 및 가격(10%)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i)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ii)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

< 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 기관 경영상태(5점)

구 분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점 수	5	4.75	4.5	3.5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5점)

구 분	5인 이상	3~4인	2인 이하
점 수	5	4	3

* 증빙서류 제출

○ 사회적 책임(10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 공포

구 분	해당없음	1개 해당	모두 해당
점 수	10	8	6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환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

1. 선정방식 및 기준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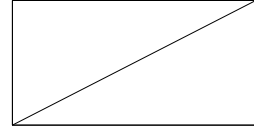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한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양식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기관(업체)명 :

[인]

<양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용역(연구)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명	개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관련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연구보고서, 조사실적만 인정(학위논문 불인정)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인정(비고에 주계약자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을 기재(조사업무는 표본수 기재)
4. 계약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경력		년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
 2.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
 (참여율은 본 과업에서 차지하는 참여 비중으로 기재)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0000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9>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회사명: _____

주 소: _____

본인은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대표이사 성 명 : (인)